



# Tax News Flash

## 2014 개정 세법 주요 내용

January 6, 2014

2013년 세법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최종 확정·공포 되었으며, 본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최종 확정·공포된 개정 세법의 간추린 내용과 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첨부한 전문가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박 수 환

부대표 고 성 천

### 국제조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범위의 확대 (법법 §98 ⑧)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법인에 건축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 93 조 제 6 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 93 조 제 6 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li></ul></li></ul>

<effect>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동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동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법상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미국, 캐나다, 독일 등)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 등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동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서면 2 팀-762, 2007. 4. 27.).

그러나, 본 조의 개정 이후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귀속되는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하지만, 인적용역소득과는 달리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이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사후적으로 환급 받는 복잡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와 외국법인 간 많은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국조법 §18 ⑤)

종 전	개 정
<p>□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li></ul></li></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동소득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li></ul> <p>* 해외법인의 수동소득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p>

<effect> 종전 국조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CFC 과세제도가 적용됨. 그러나, 적극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능동소득)이 아닌 수동소득을 과도하게 해외에 유보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동소득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수동소득 비율만큼 특

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내국인(내국법인 포함)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됨. 참고로, OECD도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이중비과세(소득을 저세율 국가에 유보하여 현지법인 소재국가에서 비과세되고 모법인인 소재지국에서도 비과세)방지 방안의 하나로 거주지국 과세권 강화 차원에서 CFC 과세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동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CFC과세대상 특정외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바, 세무조정 등의 업무 수행 시 CFC과세대상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국조법 §20조의 2 및 법법 §76 ⑬)

종 전	개 정
<p>□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제출 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p> <p>- 가산세율: 유보소득의 0.5%</p> <p>- 한도: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p>

<effect> 종전 국조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CFC 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특정외국법인에 합산대상 유보소득이 있는 법인이 관련서식 미제출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해외법인의 유보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법으로 이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중 종전 국조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국조칙 별지 제10호의 5 서식)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한도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의 가산세(법법 §76 ⑬ 신설)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법 §47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li> <li>○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li> <li>○ (좌 동)</li> </ul>

<effect>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음. 이에 따라, 2014. 1. 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 시 사후관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됨. 따라서, 불균등 유상증자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이번 개정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공개 등으로 경영권은 유지하지만 지분율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므로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4. 1. 1.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율 인하 (법법 §55 의 2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30%(미등기 40%)</li> <li>○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30%(미등기 40%)</li> </ul>	<input type="checkbox"/>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10%(미등기 40%)</li> <li>○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미등기 40%)</li> </ul>

<effect>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 등과의 형평 차원에서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추가과세의율을 종전 30%에서 10%로 인하하였는 바, 주

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한 경우로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려는 법인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를 201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추가과세 규정(법법 §55의2 ①)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한편, 법인세법 부칙(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4조에 따라, 2009. 3. 16.~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추가과세 규정(법법 §55의2 ① 2호 및 3호)이 적용되지 않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법법 §121의 2 ① 및 §121의 3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출자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lt;추 가&gt;</li></ul></li></ul>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확대 및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li></ul>
<input type="checkbox"/>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과대상 : 해외현지법인지분이 50% 이상</li><li>- 부과사유 :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보완요구 포함) 불이행</li><li>- 금액 : 1천만원 이하</li></ul></li><li>&lt;신 설&gt;</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0% → 10%</li><li>- 부과사유 : 자료 미제출시</li><li>- (좌 동)</li></ul></li><li><input type="checkbox"/> 개인 :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li></ul>

<effect> 종전 규정에 비하여 제출자료(손실거래 자료 추가), 자료 제출 대상 법인(해외현지법인지분 50% 이상 소유 → 10% 이상 소유) 및 과태료 부과 사유(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 자료 미제출)가 확대되어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되었는 바,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 (법률 §117의 2 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기준 인하
○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	○ 30만원 → 10만원

<effect>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를 유의해야 함.

<적용시기> 2014.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의 예외사유 추가 (국기법 §3)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의 예외사유 추가 ○ 연대납세자에 대한 서류 송달 규정 (국기법 1장 3절 §8 ②)
<신 설>	○ 불복 규정 (국기법 7장 1절 §55)

<effect> ①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 시에는 그 대표자 등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통지로서 해당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그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의 개정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세 고지 시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하여도 그 송달의 효력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시 동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본 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은 국세의 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였음.

<적용시기> 2014. 1. 1.부터 시행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의 축소 및 상위법령화 등 (국기법 §81의 8)**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 국기법 §81의 ① 1호 ~ 4호의 사유</li> <li>○ 국기법 §81의 ① 5호의 위임에 따라 국기령 §63의 8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기법 §81의 9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u></li> <li>-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li> </ul> </li> </ul> </li>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국기령 §63의 9 각 호의 사유</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의 축소 · 상위법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일부 사유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 제)</li> <li>- (좌 동)</li> </ul> </li>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예외 사유의 상위법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직접 규정</li> </ul> </li> <li>□ 세무조사 기간 단축에 대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 시 조사 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기 종결가능</li> </ul> </li> </ul>

<effect>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각각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로써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 밖에도 세무조사시의 일부 절차적 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 규정을 신설 (국기법 §81의 18)하는 등 납세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적용시기> 2014. 1. 1.부터 시행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국기법 §84의 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액 <input type="radio"/> 10억원	<input type="checkbox"/>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input type="radio"/> 20억원

<effect> 탈세제보의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세법

####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법 §5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 천 200 만원 이하	6%
1 천 200 만원 초과 4 천 600 만원 이하	15%
4 천 600 만원 초과 8 천 800 만원 이하	24%
8 천 800 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35%
3 억원 초과	38%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좌 등)	
(좌 등)	
(좌 등)	
8 천 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원 이하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8%

<effect> 본 조의 개정으로 약 9만명이 추가로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됨

(예시)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 1,500,000원 추가 소득세 발생

<적용시기> 2014. 1. 1.0|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소법 §59의 2 및 소법 §59의 4)**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자녀 관련 추가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 1 명당 연 100 만원</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 한 입양자인 경우 1 명당 연 200 만원</li> <li>○ 다자녀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 명인 경우 : 연 100 만원</li> <li>• 2 명 초과하는 경우 : 100 만원과 2 명을 초과 하는 1 명당 연 200 만원을 합한 금액</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공제(100 만원 한도)</li> <li>○ 의료비 공제(본인 · 경로우대자 · 장애인은 한도 없으며, 부양가족은 연 700 만원 한도)</li> <li>○ 교육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전 아동 · 초 · 중 · 고등학생 : 1 인당 연 300 만원 한도</li> <li>• 대학생 : 1 인당 연 900 만원</li> </ul> </li> <li>○ 기부금 공제(소법 §52 ⑥에 따른 한도액)</li>   <li>○ 표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 100 만원</li> <li>•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60 만원</li> </ul> </li> <li>○ 소득공제 종합한도 : 2,500 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포함)가 1 명인 경우: 연 15 만원</li> <li>• 자녀가 2 명인 경우: 연 30 만원</li> <li>• 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 연 30 만원과 2 명을 초과하는 1 명당 연 20 만원을 합한 금액</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특별공제 중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공제 : 보험료 지급액의 12%</li> <li>○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 초과 지급액의 15%</li> <li>○ 교육비 공제 : 지급액의 15%</li> </ul> </li>   <li>○ 기부금 공제 : 15%(해당 금액이 3 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li> <li>○ 표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 12 만원</li> <li>•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7 만원</li> </ul> </li> <li>○ 세액공제에 대한 종합한도는 없음</li> </ul>

<effect>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지출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전체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정한 뒤 항목별로 공제되므로 저소득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나, 전체 근로 소득자 중 상위 28% 수준에서는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적용시기> 자녀 관련 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2014.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며, 특별 공제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2014. 1. 1. 이후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표준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2014.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법 §10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 건물 등 : 40%</li> <li>○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건물 등 : 50%</li> <li>○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60%</li> <li>○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50%</li> <li>○ 비사업용 토지 : 60%</li> <li>○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60%</li> </ul>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li> <li>○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lt;삭 제&gt;            &lt;삭 제&gt;</li> <li>○ 누진세율+10%</li> <li>○ 누진세율+10%</li> </ul>

<effect>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함.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누진세율에 10% 가산) 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업무 시 세율 적용에 유의하도록 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비사업용토지) 또는 제9호(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자산(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함)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 당기발생액 기준 R&D 세액공제율 한도 인하 및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최저한세 인상 (조특법 §10 · §13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기업의 당기발생액 기준 R&D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3%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 R&amp;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50%, 6%]</li> </ul> <input type="checkbox"/>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과세표준</th> </tr> <tr> <th>100 억원 이하</th> <th>100 억원 ~ 1,000 억원</th> <th>1,000 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12%</td> <td>16%</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 1,000 억원	1,000 억원 초과	10%	12%	16%	<input type="checkbox"/> 한도 인하(조특법 §10 ① 3호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3%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 R&amp;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50%, 4%]</li> </ul>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과세표준</th> </tr> <tr> <th>100 억원 이하</th> <th>100 억원 ~ 1,000 억원</th> <th>1,000 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12%</td> <td>17%</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 1,000 억원	1,000 억원 초과	10%	12%	17%
과세표준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 1,000 억원	1,000 억원 초과																	
10%	12%	16%																	
과세표준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 1,000 억원	1,000 억원 초과																	
10%	12%	17%																	

<effect> 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거 3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의 당기발생액 기준 R&D 세액공제율 한도가 인하되었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었는바 대기업의 법인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 이후 최저한세율은 아래와 같은 바, 개정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3년	이후 2년	일반기업		
				100 억 이하	1,000 억이하	1,000 억초과
7%	7%	8%	9%	10%	12%	17%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R&D 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하 (조특법 §11 · §25의 2 · §25의 3 · §25의 4 · §104의 18 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 규모에 불문하고 세액공제율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설비투자(조특법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조특법 §25의 2), 환경보전시설 투자(조특법 §25의 3), 대학 등에 기부하는 R&amp;D 설비투자(조특법 §104의 18 ②)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 × 10%</li> <li>○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조특법 §25의 4)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 × 7%</li> </ul>	<input type="checkbox"/>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 투자금액 ×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li> <li>○ 세액공제 : 투자금액 ×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7%)</li> </ul>

<effect>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하되어 대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하된 세액공제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2013년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투자분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완료되는 투자분에 대하여는 향후 투자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조특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구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2 ① · §12의 3 · §12의 4 신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조특법 §12 ②) : 특허권 등 취득금액 × 7%(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 등을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 ①)</li> <li>○ 감면세액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0%</li> <li>□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 3)</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2015. 12. 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합병법인</li> <li>○ 세액공제액 :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 × 10%</li> <li>○ 법소정의 사유 발생시 공제세액 추징</li> <li>○ 5년간 이월세액공제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 4)</li> <li>○ 대상 : 2015. 12. 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내국법인</li> <li>○ 세액공제액 : 주식 등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 × 10%</li> <li>○ 법소정의 사유 발생시 공제세액 추징</li> <li>○ 5년간 이월세액공제 허용</li> </ul>
--------------------	---

<effect>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합병, 주식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또는 취득 거래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간에 다양한 기술이전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설된 기술혁신형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적용요건의 검토, 순자산시가 · 기술가치금액의 평가 등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다소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기술이전 · 합병 · 주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46의 7 · §46의 8 · §47의 4)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의 전략적제휴를 위한 법소정의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li> </ul> </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대상기업<sup>(*)</sup>의 법소정 주주가 2015. 12. 31. 이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매각 후, 법소정의 기간 내에 그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벤처기업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li> </ul> </li> </ul> </li> </ul>
<p>□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업종 확대(조특법 §47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고,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함)</li> </ul> </li> </ul>

<effect>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 신설되고, 동일 업종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구조조정 관련 업무 수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적용시기>

(조특법 §46의 7) 2014. 1. 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46의 8) 2014. 1. 1.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47의 4) 2014.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의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127 ①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 출연금 등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sup>(*)</sup> 에 상당하는 금액 <sup>(*)</sup> 국가 등의 이자보전금액 또는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effect>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이나 이자지원 등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개정 내용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 재화의 공급 특례 (부법 §1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로의 전용 시 공급 의제 ○ 운수업 등 소정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 기생산 · 취득재화 중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신 설>	(좌 동)  ○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로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 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것

<effect> 본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는 신설 규정을 2014.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3. 7. 1. ~ 2013. 12. 31. 기간 중에 "운수업 등 특정업종 경영자 이외의 사업자가 자  
기생산 ·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및 그 자동차의 유지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본 개정 법률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결정 · 경정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관련 판례(서울고법2008누20972, 2009. 1. 20.)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

이 완성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결정 · 경정 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VAT 면제 거래에 대해 VAT를 거래 ·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법 §3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소정의 매입세액은 제외</li></ul>	(삭 제)

<effect> 본 조의 개정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도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법 제52조에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시에는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됨. 이로써, 2014년 1월 1일 이후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제외한 VAT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하는자의 VAT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한편, 2013. 12. 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3. 12. 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포괄양수도 거래 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허용 (부법 §52 ④, §38 ① 1호, §10 ⑧ 2호)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리납부 및 공제하는 매입세액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포괄양수도 시점에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li></ul>
<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공급 특례(포괄적 사업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단서 신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li></ul>

<effect>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선택 규정의 신설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도록 규정된 반면, 포괄적 사업양수도 이외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도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받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VAT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됨(법 §39 ① 3호 삭제). 한편, 본 법 개정 시 사업양수가 대리납부하는 경우의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잠재적인 Risk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을 명확화 (부법 §5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임대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임대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li></ul>

<effect> 부가가치세법 전면개정 시(2013. 6. 7. 법률 제11873호), 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더불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명세서에 대한 제출의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여 왔음.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부동산임대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출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법

####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 강화 (상증법 §3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증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유증 등을 통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li></ul>

<effect> 종전에는 유증 및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

세가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정법인의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확대 (상증법 §41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법인, 휴·폐업 법인                &lt;신 설&gt;</li> </ul>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 영리법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li> </ul>

<effect> 흑자 영리법인의 거래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흑자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상증법 §45의 3 ①, 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lt;신 설&gt;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 비율의 1/2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li> <li>○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은 제외</li> </ul>

<effect>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모두 차감함으로써 증여세 감소효과가 있음. 또한,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산정 시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증여재산 공제금액의 인상 (상증법 §5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3 천만원 미성년 1.5 천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 천만원 미성년 2 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 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 천만원

<effect>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은 201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므로, 직계존속이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2013. 12. 31. 이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 ①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공제
- ②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에 ①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 가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보완 (상증법 §1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입상속공제 적용대상			<input type="checkbox"/> 가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li> <li>○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영위</li> <li>○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input type="checkbox"/> 가입상속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가입상속공제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X(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MIN [가입상속 재산가액 × 70%, 공제한도액*]</li> <li>② MIN [가입상속 재산가액, 2억원]</li> </ul> </li> <li>*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10년 이상 15년 미만), 150억원(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20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가입상속재산가액, 공제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원(10년 이상 15년 미만), 300억원(15년 이상 20년 미만), 500억원(20년 이상)</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인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인원 유지요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li> </ul> </li> </ul>		

<p>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연도 :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li> </ul>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li> </ul>	<p>기준연도의 80% 이상 &amp;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연도: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li> </ul>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액 하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li> </ul>
---	--

<effect> 매출액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며, 기업상속공제금액의 공제율이 100%로 개정되고 공제한도 역시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개정되어 상속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되, 법 제18조 제5항(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추징액 하향 조정)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소득법 §97의 2 ④, ⑤)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토지, 건물, 주식 등</li> <li>○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li> </ul>	<p><input type="checkbox"/> 기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li> <li>○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기업상속 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기업상속공제적용률)}</li> </ul>

<effect> 종전에는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업무 수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 관련법

### 지방세 가산세의 산출기준 변경 (지기법 §53의 2 및 §53의 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무신고가산세 산출기준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effect> 구 지방세기본법 §53의 2 ①에서는 지방세관계법(지법과 지특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기 전의 세액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가산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의 지방소득세 독립화 (지법 §103의 19 ~ §103의 4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li><li>○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 납부, 수정신고 · 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li><li>○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li></ul>

<effect>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지특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특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 감면 규정을 배제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부담 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의가 요구됨. 또한, 기존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부가세 방식에 비해 독립적인 과세 체계하에서는 납세협력 비용 및 행정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함.

한편, 법법 §7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법 §103의 29), 이자소득 및 소정의 투자신탁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는 것에도 주의가 요구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과규정 개선 (지법 §146 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등 ○ 표준세율 : 4/10,000 ~ 12/10,000  ○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의 200%  <신 설>	 ○ (좌 동)  ○ (좌 동)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의 300%

<effect>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300%를 세액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Contacts

국제조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전한준 3781-3489 hjcho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글로벌서비스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상속증여&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간접세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